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정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명칭 및 위치)
 - 택지개발에 의거 지번 변경
- 제7조(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편의와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완화 및 삭제
- 제8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 사용허가 제한규정이 모호하여 삭제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허가받은 자가 사용 전에 계약해제 및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기일을 완화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부담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삭제
-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허가의 취소사유가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정립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규정 중 선언적 의미로서 조례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계약서에 반영
- 제19조(위탁의 취소)
 - 규정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일부 삭제.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완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안입니다.

안 제2조 택지개발에 따른 지번변경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예정일 15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3일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센터 사용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고, 단서 규정의 개정은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규정 내용을 구체화 시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 제2항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현행 “5일 이내”를 “1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신속히 통지하여 사용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7조 제4항의 내용을 다소 개정하여 제7조 제2항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3항 본문은 사용허가 신청 경합시 허가기준에 관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 중 전단은 문화센터 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후단은 청소년수련관의 예외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현행 단서규정 중 전단을 삭제하자는 것이나 안처럼 개정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기타 문화센터 시설의 경합신청시 사용허가는 제7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허가기준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예외적 특별사유에 의한 사용허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기타 문화센터 시설 사용의 경합신청시 제7조 제3항의 일반적 허가기준에 따른 사용허가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용허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사용료의 선납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토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개정안처럼 선납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공공시설 사용료 선납 관행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다른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사용료를 사용승인후 사용자가 지체없이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제4항 → 제2항)과 사용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8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허가 금지사항을 제2항에서는 입장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개의 항을 합일하여 사용허가 금지사항과 입장제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한규정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사용허가제한 및 입장제한 사유를 보다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1조 제1호는 현행 조례의 어긋난 자구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제2호는 사용자의 계약해제 및 사용권의 취하 기한을 “사용 5일전”에서 “사용 1일전”으로 완화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은 관련조문의 정비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2조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 사용자의 의무와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원칙 규정으로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항의 경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관리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사용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개정안처럼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4조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권 등을 구청장에 유보하고 있고, 그 사유로서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4호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시설의 개·보수 등 사유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로 개정하자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허가취소 등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8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8조는 문화센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수탁자

에게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처럼 개정한 것은 법령 자구의 표현상 원칙(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의 하나인 간결성이라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9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9조는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서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제2호와 제5호는 규정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개괄적이어서 위탁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재량의 폭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